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 제출서류 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